

개인회생 계좌번호신고서 등 채권자 제출서류 전자적 제출 가이드 V1.1 (채권자용)



법원행정처

<목 차>

I. 개요	3
II. 개선사항	4
III. 처리절차	5
1.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사건 등록	5
2. 전자소송 프로그램(PC 버전)에서 희생파산 제출서류 다건 작성·제출	9

개인회생 계좌번호신고서 등 채권자 제출서류 전자적 제출 가이드

I. 개요

■ 민사전자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및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사건 채권자 계좌번호신고서 등 제출서류의 전자적 제출 방법 개선

■ 주요 내용

- 종이·전자사건 불문하고 채권자가 채권자 계좌번호를 신고하는 등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한 문건 제출 방법 개선
- 전자소송 프로그램(PC 버전)을 통하여 채권자 계좌번호신고서, 이의신청서 다건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2017년 1월 1일 자 시행

II. 개선 사항

1.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종이사건 채권자 문건 제출

- 종이사건 채권자에게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 재판부가 송달 처리할 때 종이사건 채권자에게 전자소송 안내문(전자소송 인증번호 포함)을 보낼 수 있도록 수정

2. 전자소송 프로그램(PC 버전)에서 채권자 계좌번호신고서, 이의신청서 다건 작성·제출

- 채권자가 종이사건의 경우에도 회생파산 제출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
- 전자소송 프로그램(PC 버전)을 통하여 종이·전자사건 불문하고 개인회생사건의 채권자 계좌번호신고서와 이의신청서를 일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III. 처리 절차

1. 전자소송홈페이지 전자소송 사건등록

☐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소송 사건등록

나의전자소송 | 서류제출 | 송달문서확인 | 열람/발급 | 제증명 | 납부/환급 | 나의전자소송 | + 전체메뉴보기

전자소송사건등록 | 홈 >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① 회면도움말 | ② 나의메뉴추가 | ③ 출력

● 전자소송 동의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소송 동의를 한 소송관계인에 대하여는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송달을 실시하고, 이때 소송관계인이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또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후자의 경우 송달간주일은 1주가 지난 날 0시가 되므로, 기간 계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소송관계인 중 1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안과 관련된 신청 사건은 본안에 관한 전자소송 동의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안사건의 1회 기일 다음날 후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더라도 본안사건과 신청사건 모두 전자문서의 제출만 가능하고,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기록열람이나 송달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소송유형	회생파산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 개회 90
소송관계인 유형	채권자
전자소송인증번호	2040342019

▶ 알람서비스는 자동으로 등록되며 [나의전자소송>알람서비스] 메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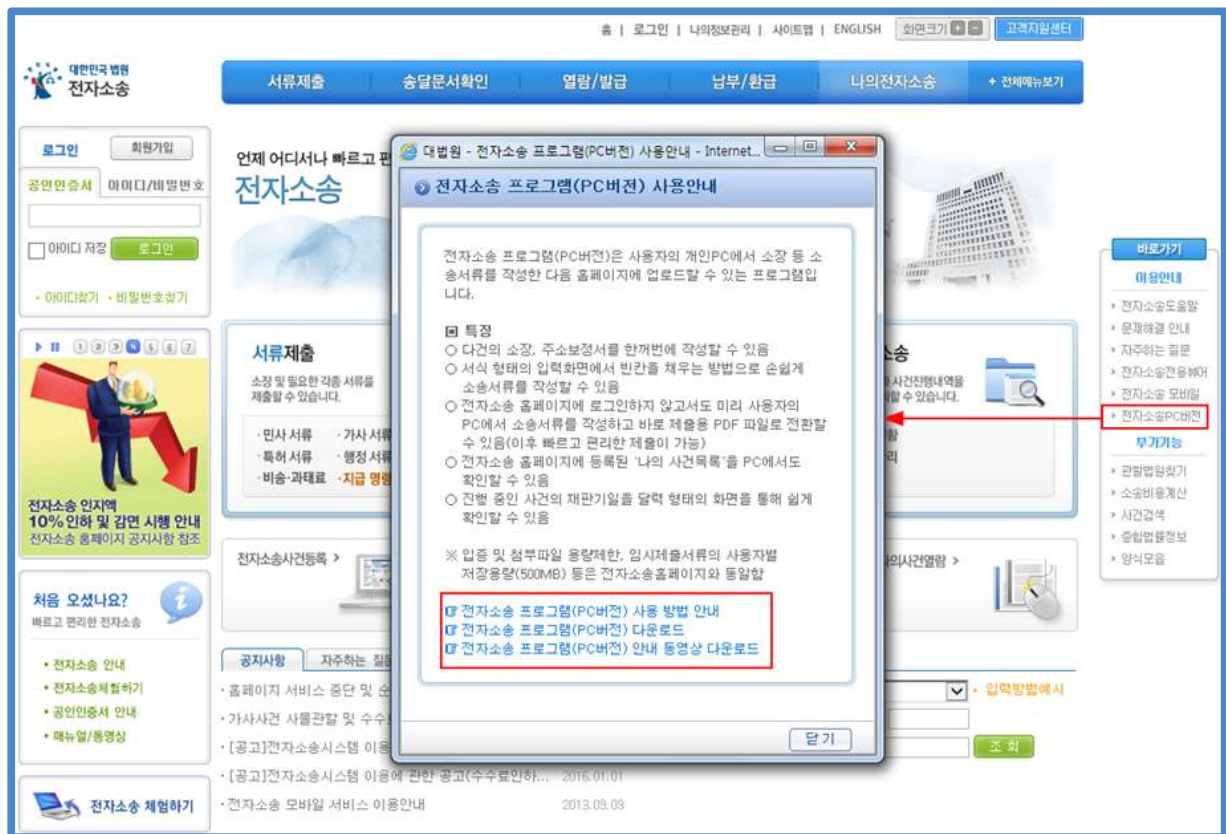
등록

- 전자소송홈페이지의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접속’
- 전자소송홈페이지 회원만 전자적으로 문건 제출 가능
- 재판부에서 송부한 전자소송 안내문에 표시된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나의사건 등록
- 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부에 인증번호 발급 요청
- 나의사건으로 등록된 종이사건에 대해 전자적으로 문건 제출 가능
- 단, 채권자가 이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등록된 사건은 사건구분이 전자소송 사건으로 변경되지 않음

2. 전자소송 프로그램(PC 버전)에서 채권자 계좌번호신고서, 이의신청서 다건 작성·제출

1) 전자소송 프로그램(PC 버전) 다운 및 로그인

■ 전자소송 프로그램(PC 버전) 다운



- 전자소송홈페이지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서 '전자소송PC 버전'을 클릭하여 전자소송 프로그램(PC 버전)을 다운로드함

■ 전자소송 프로그램(PC 버전) 로그인



- 바탕화면에 추가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로그인 가능

2) 전자소송 프로그램(PC 버전) 서류 작성 및 임시 제출

■ 서류 작성

- 메인화면에서 '서류작성' 메뉴를 클릭하면 나의사건목록 화면이 나타남



나의 사건 목록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개회[253] | 접수일자: 2016-07-15 ~ 2016-07-22 | 조회

법원	재판부	사건번호	사건명	접수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개연회상단독	2016개회540	개연회상	2016.07.0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개연회상단독	2016개회434	개연회상	2016.06.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개연회상단독	2016개회168	개연회상	2016.03.30
서울중앙지방법원	미배당	2016개회151	개연회상	2016.03.2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개연회상단독	2016개회144	개연회상	2016.03.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개연회상단독	2016개회83	개연회상	2016.03.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개연회상단독	2016개회69	개연회상	2016.03.0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개연회상단독	2016개회76	개연회상	2016.03.09
서울중앙지방법원	미배당	2016개회45	개연회상	2016.03.04
서울중앙지방법원	미배당	2016개회38	개연회상	2016.02.18
서울중앙지방법원	미배당	2016개회14	개연회상	2016.02.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개연회상단독	2015개회100023	개연회상	2015.10.28
서울중앙지방법원	미배당	2015개회100009	개연회상	2015.09.2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개연회상단독	2015개회147	개연회상	2015.09.22
서울중앙지방법원	미배당	2015개회130	개연회상	2015.09.09
서울중앙지방법원	미배당	2015개회123	개연회상	2015.09.0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개연회상단독	2015개회1003316	개연회상	2015.07.1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개연회상단독	2015개회1010	개연회상	2015.06.27

선택 | 닫기

- 작성 문건과 대상 사건을 선택하고 선택 버튼 클릭

재판자 계좌번호신고서

사건목록

국민은행 | 계좌번호: 29870104085607 | 예금주명: 124 | 일괄적용 | 계좌정보보수기기 | 내정보일괄적용

법원	사건번호	재판자명	재판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개회540	김요한	3	국민은행	29870104085607	12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개회434	김요한	3	국민은행	29870104085607	124	...

주소: 00000 | 우편번호찾기 | 국내주소가 아닌 경우 체크 후 우편번호 조회 없이 직접 입력하세요.

상세주소 표기방법: 동 호수 등 +(동명, 아파트/건물명)

연락처: 집 0504 - 1111 - 2222 | 직장 050 - 2312 - 1231 | 휴대전화번호 010 - 1111 - **** (필수입력사항)

계좌정보: 국민은행 | 계좌번호: 29870104085607 | 예금주명: 124 | 계좌확인

일괄저장 | 닫기

- 상단의 계좌번호 '일괄적용', '내정보일괄적용' 버튼을 이용하여 전체 사건에 동일한 정보 적용



- 개별 사건 수정은 아래 상세정보에서 내용을 편집하여 저장 버튼 클릭
-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일괄저장 버튼 클릭

■ 서류 작성완료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사 건 : 2016제회168 개인회생

채 무 자 : 김요한

채권번호	2	채권자명	이재권
주소	1		
전화번호	(집)0504-1111-2222	(직장)050-2312-1231	(휴대폰)010-1111-1111

※ 채권번호함에 채권자특성상의 채권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 제1항에 따라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본채권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12343	국민은행	1234

2016. 06. 30

채권자 이재권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해당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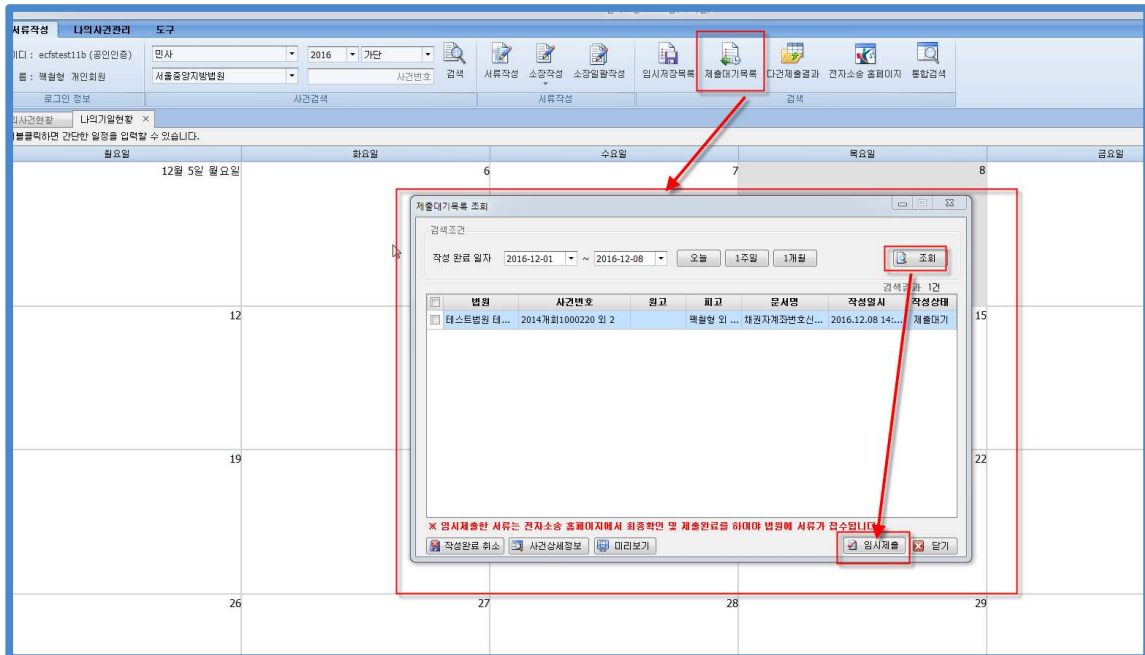
※ 채권자는 본채권에 따른 본채권을 송금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까지 위 신고서를 회생위원에게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는 자신의 예금주(법인인 채권자는 법인등기부의 영칭과 예금주가 일치해야 함)의 계좌번호를 신고하여야 하고, 자신의 예금주가 아닌 경우에는 은행을 첨부하거나 본인인 직접 제출하는 등으로 계좌번호 신고서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생성된 계좌번호신고서를 확인 후 상단에 '작성완료' 버튼 클릭



■ 서류 임시 제출



- 제출대기목록 화면에서 다건으로 생성한 문서를 확인 후 ‘임시제출’ 버튼 클릭
(⇒ 생성된 문서 전자소송홈페이지로 전송)

3)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문건 제출

■ 임시제출한 채권자 제좌번호신고서 확인 및 최종 제출



- 전자소송홈페이지의 PC 작성목록에서 작성문서 확인 후 ‘나의전자소송>작성중서류’ 화면에서 임시제출된 문건 서식 확인
- 문건 확인 후 제출문건에 이상이 없으면 전자서명 완료 후 최종 제출
(끝).

